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근거 마련〉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61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01.
3. 회 부 일 : 2024. 11.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 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①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의 시기·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소방활동재해¹⁾의 발생 위험성이 있음.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에 현행법은 업무 특성상 각종 유해인자 노출 위험성이 큰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제16조제1항²⁾). 한편, 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진 및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는 특수건강진단의 세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수건강진단의 내용은 소방청 훈령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³⁾. 그 밖에 119구급대원과 119구조대원의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⁴⁾에서 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④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4 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① 소방청장등은 소속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구급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2014. 11. 19., 2017. 7. 26.>

⑥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조(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정기

소방공무원의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소방공무원은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폐렴구균,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을 위한 재원으로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은 일반회계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

<2024년 예방접종 예산 집행 현황(예시)>

(단위: 명, 천원)

구분	예방접종 항목 ⁵⁾	접종대상	인원*	집행 예산
광주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전직원	1,757	63,683
울산	A형 간염, B형 간염, TD, 수두, MMR, Tdap, 폐렴구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구조·구급대원	319	26,313
	A형 간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전직원	993	25,391

* 항목별 인원 산정

(자료: 소방청)

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5) 2023년도 및 2024년도의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현황은 [참고 1] 참조

<소방공무원 대상 주요 예방접종 현황>

☐ 근 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별표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별표]

☐ 주요 예방접종 종류 및 주기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만 19~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인플루엔자	Flu	위험군에 대해 매년 1회			매년 1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Tdap/Td	Tdap으로 1회 접종, 이후 10년마다 Td 1회			
폐렴구균	PPSV23	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2회			
	PCV13	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환자에 대해 1회			
A형 간염	HepA	2회	항체 검사 후 2회		위험군에 대해 항체 검사 후 2회
B형 간염	HepB	위험군 또는 3회 접종 / 감염력이 없으면 접종			검사 후 3회
수두	Var	위험군 또는 접종력/감염력이 없으면 항체검사 후 2회 접종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위험군 또는 접종력/감염력이 없으면 항체검사 후 1회 또는 2회 접종 (가임 여성은 풍진 항체 검사 후 접종)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현재 소방청 훈령에 근거해서 실시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 접종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은 현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령상의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임. 다만, 이를 상위법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봄.

다음으로, 유사 직역의 감염병 예방 정책 및 관련 규정의 형식을 살펴보면,

군인의 경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군에서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⁶⁾. 다만, 외부와 단절된 채 집단생활을 하는

군인은 소방공무원과 근무 환경상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경찰공무원의 경우 소방청과 달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⁷⁾ 외근 경찰관의 경우 전염병 예방 필요성이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각종 유해인자 노출 위험성이 높아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의무를 법률에 직접 정할 필요성이 있고,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성질환⁸⁾ 유행 등에 대비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종류를 확대하고 감염성 질환

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는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하며, 공유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다만, 경찰청은 경찰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일반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8) 소방청은 코로나19, 엠폭스 등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검사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감염성 질환 검사 항목>

관련 근거	대상	항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청 훈령) [별표]	채용 후 배치 전	A·B형 간염, 수두, 홍역, 잠복결핵
	쫄 소방공무원	C형 간염, 매독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별표]	구조·구급대원	A·B·C형 간염, 매독 등

(자료: 소방청)

그 밖에,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필요한 예산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현재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방공무원에게 A형간염, B형간염, 독감, 파상풍 등 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총 69억 4,400만원(연 평균 13억 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국회예산정책처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 (안 제16조의2 신설)	3,320	849	886	925	964	6,944	1,389

주: 1.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실시(안 제16조의2)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A형간염, B형간염, 독감, 파상풍 등 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다만, 소방청에서는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종류를 확대하고⁹⁾ 감염성 질환 검사를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소방청의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접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등 다른 직군에도 선례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¹⁰⁾을

9) 구체적으로, 소방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에 대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내용은 [참고 2] 참조

10) 가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상 규정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2021년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도입*되었는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 도입 여부 검토 시 “경찰관의 경우에도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해요소에 노출되는 직역이라는 점에서 소방관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이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하게 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에도 감염성 질환의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위한 특수건강진단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41억 6,300만원의 예산을 소방공무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편성하는 등 현재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 중이라고 밝히면서, 경찰공무원 등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08984호)이 2021. 3. 4 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 4. 20일에 공포되었음(공포번호 18085호).

** 출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제2101936호),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6면.

참고 1

소방공무원 예방접종 현황(2023 ~ 2024)

(자료: 소방청)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구분		예방접종 항목	접종대상	재원
서울	'23년	B형 간염,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구조·구급대원	시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24년	B형 간염, 수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구조·구급대원	시비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부산	'23년	(소방서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홍역 등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파상풍, 폐렴구균,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24년	(소방서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홍역 등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파상풍, 폐렴구균,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대구	'23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급대원	시비
		(소방기관별) 인플루엔자	전직원	시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급대원	시비
		(소방기관별) 인플루엔자	전직원	시비
인천	'23년	(본부)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24년	(본부)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광주	'23년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전직원	시비
	'24년	독감,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전직원	시비
대전	'23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홍역, 파상풍	구조·구급대원	시비
		(소방기관별) 파상풍	펌볼런스 및 생활안전대원	시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홍역, 파상풍	구조·구급대원	시비
		(소방기관별) 파상풍	펌볼런스 및 생활안전대원	시비
울산	'23년	A형 간염, B형 간염, TD, 수두, MMR, Tdap, 폐렴구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구조·구급대원	시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Tdap, MMR,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전직원	시비
	'24년	A형 간염, B형 간염, TD, 수두, MMR, Tdap, 폐렴구균, 대상포진,	구조·구급대원	시비

구분		예방접종 항목	접종대상	재원
		인플루엔자		
		A형 간염, B형 간염, 인플루엔자	전직원	시비
세 종	'23년	홍역	구조·구급대원	시비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폐렴구균, 독감	전직원	시비
	'24년	수두	구조·구급대원	시비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디프테리아), 홍역, 폐렴구균, 독감	전직원	시비
경 기	'23년	(소방기관별) A형간염, B형간염,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B형간염,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현장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전직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간염, B형간염,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B형간염,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현장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대상포진, 파상풍,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전직원	도비
강 원	'23년	독감, 파상풍, A형 간염, B형 간염, MMR	구조·구급대원	도비
	'24년	독감, 파상풍, A형 간염, B형 간염	구조·구급대원	도비
충 북	'23년	(본부) 대상포진 / (소방기관별) 독감, 파상풍 등	전직원	도비
	'24년	(본부) 대상포진 / (소방기관별) 독감, 파상풍 등	전직원	도비
충 남	'23년	(소방기관별) 독감, A형 간염, B형 간염, Tdap 등	구조·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독감, 파상풍, 폐렴구균 등	전직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독감, A형 간염, B형 간염, Tdap 등	구조·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독감, 파상풍, 폐렴구균 등	전직원	도비
전 북	'23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 인플루엔자	구조·구급대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파상풍, 인플루엔자	구조·구급대원	도비
전 남	'23년	(소방기관별) 독감	구조·구급대원	도비
		(본부) 대상포진	전직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독감, 폐렴구균	전직원	도비
경 북	'23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인플루엔자, 파상풍, 폐렴구균 등	전직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두, MMR, Tdap	구급대원	도비
		(소방기관별) 인플루엔자, 파상풍, 폐렴구균 등	전직원	도비
경 남	'23년	(소방기관별) 독감	전직원	도비
	'24년	(소방기관별) A형 간염, B형 간염, 독감, 폐렴구균, 파상풍, 대상포진	전직원	도비
제 주	'23년	폐렴구균, 파상풍, 독감, 대상포진	전직원	도비
	'24년	폐렴구균, 파상풍, 독감, 대상포진	전직원	도비

구분		예방접종 항목	접종대상	재원
창원	'23년	(소방서별) B형 간염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24년	(소방서별) B형 간염	구조·구급대원	시비
		(본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전직원	시비

참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나. 수두(水痘)

다. 홍역(紅疫)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百日咳)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타. 풍진(風疹)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행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파상풍(破傷風)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發疹熱)
 차. 찻가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恐水病)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너.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더. 황열

러. 뎅기열
 머. 큐열(Q熱)
 버. 웨스트나일열
 서.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類鼻疽)
 처. 치쿤구니아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梅毒)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삭제 <2023. 8. 8.>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침균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